

## < 국민의견으로 접수된 (사)오픈넷 의견에 대한 답변 >

귀사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관심과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심사기준 개정사항이 아니라 특허법 개정사항이라는 의견

○ 특허법의 해석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은 심사기준 개정사항입니다.

- 현재도 특허법의 해석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사지침서, 그리고 컴퓨터SW 기술분야 외 10개의 산업기술별 심사기준을 통해 심사실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매체 청구항 인정('98), 영업방법(BM) 발명 인정('00), 동물 및 유전자분야의 생명공학 발명('10)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기준의 개정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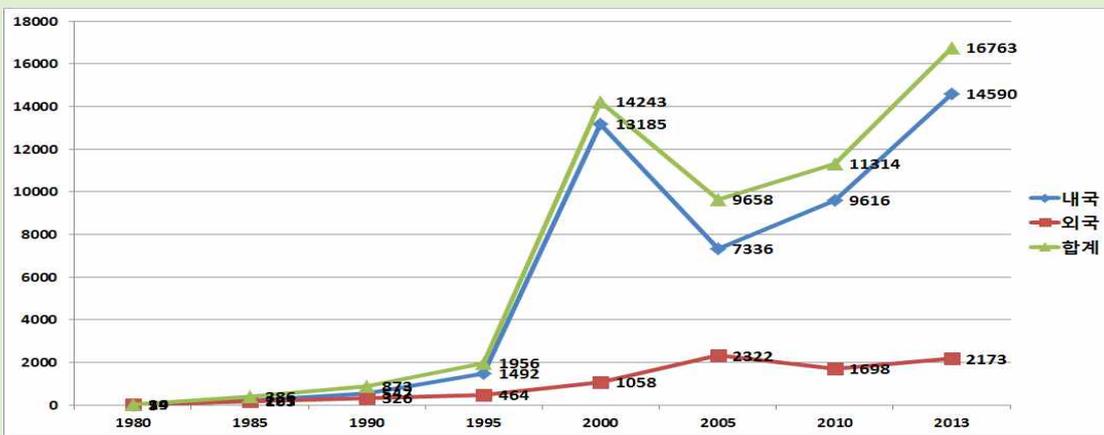
- 청구항 말미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명확한 것인지 또는 불명확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심사실무에 관한 것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컴퓨터관련 발명 심사기준 1.1.2에서 발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세계적으로도 심사실무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미국의 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2106, 2124.01, 2161.01), 일본의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發明(1.1 特許請求の範圍の記載要件), 유럽의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Part F Ch. 2, Ch. 5, Part G Ch. 2)에서 청구항 말미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된 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2. 심사기준 개정은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고 온라인공간으로 전면확대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

- 컴퓨터SW에 특허를 인정해오면서 국내SW발명에 대한 특허출원도 1980년 89건, 1995년 1,956건, 2013년 16,763건으로 꾸준히 확대·성장해오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에 장애가 된다거나 온라인 공간으로 전면확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기술분야 특허출원 동향(G06F 3/~12/, G06F 17/, G06F 19/, G06K 9/, G06K 15/, H04L 9/, A63F 9/, A63F 13/, G06Q 전부)



- 오히려 SW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 설문조사('14.04.17.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주관 2014 지식경영컨퍼런스 참석자 대상, 114개사 응답)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인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92%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 이미 알려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기술(OSS)은 누구도 특허받을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오픈소스 기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기존의 오픈소스와 비교해도 정책적인 지향점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 3. 저작권과 상충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

-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모두 특별법으로서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이 특허는 기술적 사상, 저작권은 표현으로 서로 다르고,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특허권과 저작권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양법의 충돌로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 4.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인정이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 (외국의 사례)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2000년 초반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특허로 인정하고 있습니다.<sup>1)</sup>

미국	<p>- “컴퓨터에서 구현되고 유용한 효과가 나타나면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을 특허로 인정”하는 심사기준* 운영</p> <p>* US MPEP(Rev.9, Aug. 2012) 2103, 2124.01, 2161.01, 2164.06 등에 명기</p>
유럽	<p>- “컴퓨터에서 구현되고 더 나은 기술적 효과가 나타나면 컴퓨터 프로그램청구항을 특허로 인정” 하는 심사기준* 운영</p> <p>* EPO Guidelines for Examination(Sep. 2013), Part F Ch. 2, Ch. 5, Part G Ch. 2등에 명기</p>
일본	<p>- ‘00년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프로그램”청구항의 기재를 허용함</p> <p>* 일본 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関連発明(2012.04) 1.1 特許請求の範囲の記載要件 에 명기</p>

1) 외국의 특허등록 사례

: 미국특허 제7,028,338호(제16항), 유럽특허 제1,270,851호(제6항), 일본특허 제3,999,214호(제5항)

- 미국의 ALICE vs CLS 뱅크 사건은 추상적 아이디어만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것으로 우리청에서 개정하려는 청구항 말미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기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 WIPO의 2010년 조사를 인용하면서 64개국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 나라 중에서 호주, 독일, 인도, 영국, 유럽 특허청등은 하드웨어와 결합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64개국은 아마도 하드웨어와 결합되지 않는 컴퓨터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특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의 기준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귀사의 관심과 걱정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개토론 제의에 대해서는 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4.05.29.

특허청

특허심사2국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